

머리말

가정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 중대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와 같은 심각한 사유로 가정과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며, 또한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

캘리포니아에는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1. 이혼
2. 법적 별거 (Legal Separation)
3. 약식 이혼 (Summary Dissolution)
4. 혼인 무효 (Annulment)

위 옵션들은 본인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 중요사항:

법적인 절차를 밟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따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육체적 결별(physical separation)이라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위해 따로 배우자의 허가나 법원 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민구제법안

당신이 만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민법이나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이 경우는 특히 당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이민 구제법안이 존재하는데 이 법안은 주로 정식이혼이나 혼인무효를 하기 이전의 피해자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이혼

이혼을 함으로서 결혼생활을 법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통해 자녀 양육권, 양육 재정 보조, 자녀 방문, 배우자 재정보조 및 재산분할이나 부채분할 문제까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가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이혼 절차에 문제가 없는 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을 위해 특별한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잘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3. 캘리포니아 거주요건 (California residency requirement): 본인 혹은 배우자가 이혼 소송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6 개월 이상을 거주하였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별로 다른 거주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에이 카운티에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가 최소한 3 개월 이상 엘에이 카운티에서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4. 6 개월 규칙 (The six-month rule): 이혼이 공식화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배우자가 법적으로 이혼 청구서류를 받은 날(the date of service)로부터 6 개월하고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예): 2007 년 1 월 1 일에 이혼소송을 신청했고, 배우자가 법적으로 소송 서류를 2007 년 1 월 2 일에 받았을 경우(이 날짜를 the date of service 라고 합니다) 이혼이 공식화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2007 년 7 월 3 일, 즉 배우자가 법적으로 소송 서류를 받은 날(date of service)로부터 6 개월이 지난 날의 바로 다음 날이 됩니다.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A. 자녀 양육권

부부간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양육권 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 양육권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최선** (부모에게 최선이 아닌) 이라고 여겨지는 결정을 내립니다. 양육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부모는 두 종류의 양육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할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이 권리는 자녀의 인생에 관한 결정권, 예를 들어 교육, 종교, 재정, 및 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제반합니다.

일방 법적 양육권(Primary legal custody): 배우자중 한 사람만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양방 법적 양육권 (Joint legal custody): 이 경우에는 부모 모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양육권(Physical custody):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방 물리적 양육권(Primary physical custody): 이 경우 당신은 자녀와 지속적으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양방 물리적 양육권(Joint physical custody): 이 경우에 자녀는 일정기간은 아버지와 일정기간은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전반적인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반드시 가정법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B. 자녀 방문 (Child Visitation)

당신이 전반적인 물리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당신에게 자녀 방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면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자녀 방문 명령(supervised visitation)을 법정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계속)

C. 양육 지원 (Child support)

만약 본인이 일방 물리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 보다 더 많은 물리적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지원 금액은 당신의 수입과 자녀들의 아버지의 수입,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만나는 횟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D. 배우자 재정 지원 (Spousal support)

양방 모두 상대에 대해 배우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원은 이혼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기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지원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명과 함께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법정 앞에서 증명 되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결혼 지속 기간, 배우자와의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결혼 지속 기간이 길었을 경우 배우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E. 재산 및 채무

캘리포니아는 공동자산 (community property) 이 인정되는 주입니다. 공동 자산 이라는 것은 당신과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을 일컬으며 이혼할 경우 반드시 분할되어야 하는 재산입니다. 공동 자산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결혼 이전이나 이혼 이후에 습득된 자산은 **부부분리소유자산 (separate property)** 이라고 하며 이혼할 경우 분할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선물이나 상속은 결혼기간 동안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분리소유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양방 모두 법정 앞에서 공동자산과 부부분리소유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정관련 서류 및 자산과 채무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법정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정한 재산 분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법적 별거 (LEGAL SEPARATION)

아직 완전히 결혼생활을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혼을 위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법적 별거가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문화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 때문에 법적 별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간주되어 재혼을 할 수는 없지만, 공동 자산 분할이나 양육권 결정, 자녀 방문, 양육 지원 및 배우자 재정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법적 별거에 합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거 신청은 이혼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3. 약식이혼 (SUMMARY DISSOLUTION)

약식이혼(summary dissolution) 은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 간소화된 법원절차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고, 결혼한지 5년이 넘지 않았으며, 부부 공동자산이 거의 없고 남편이나 부인 모두 배우자 재정지원을 원치 않을 경우 약식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혼과 동일한 거주 요건이 적용되며(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이전 최소 6 개월 이상 거주), 양방 모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4. 혼인 무효(ANNULMENT)

혼인무효(annulment)란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는 사기, 중혼(Bigamy: 배우자가 이중으로 결혼하는 것), 근친상간, 치료불능의 정신질환, 협박에 의한 강제 결혼, 또는 부부 중 한쪽이 결혼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만 성사 가능합니다.

☑ 중요 사항:

혼인 무효는 당신의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당신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이 혼인무효를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관련된 가족법

다음과 같은 이혼 관련 가족법이 존재합니다. 이하 법들은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자의 적용됩니다.

친부권 조치 (PATERNITY ACTIONS)

자녀의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친부권 조치(paternity actions)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양육권, 양육 지원권 및 자녀 방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부권 소송을 통해서 법적 친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이혼과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지원 및 자산 분할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S)

가정 폭력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당장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을 때 당신은 즉시 법정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란 배우자나 파트너가 당신에게 시도하는 온갖 접촉을 차단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문서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녀와 함께 있을 경우 법원에 임시 자녀 양육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한 상태라면, 법원에 임시 자산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다 영구적인 수단, 예를 들어 법적인 이혼수속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 응답하는 방법 (ANSWERING COURT PAPERS)

배우자나 파트너가 당신을 상대로 가족법 소송을 걸어 올 경우 우선, 즉시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원에서 오는 문서에 신중하고 정확한 대처를 해야만 당신의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서류를 정식적으로 받았을 경우 30 일의 응답 기한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을 무응답으로 넘기게 되면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 하에 이혼소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기관 및 단체

법률 상담

- 아태 미주 법률센터(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 여러 아시아 언어 지원 (213) 977-7500
 - 한국어 (800) 867-3640

엘에이 법률 보조재단

- 스페인어와 다양한 아시아 언어 지원 (800) 399-4529

네이버후드 법률서비스

- 스페인어와 다양한 아시아 언어 지원 (800) 433-6251

전미 가정폭력 핫라인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 24 시간 핫라인 (800) 799-7233

가정폭력 쉼터 (DOMESTIC VIOLENCE SHELTERS)

- 아태 가족센터
- 다양한 아시아 언어 지원 (800) 339-3940
- 24 시간 핫라인

YWCA/WINGS 헬프 라인

- 스페인어와 다양한 아시아 언어 지원 (626) 967-0658
- 24 시간 핫라인

아태 여성센터 (Asian Pacific Women's Center)

- 다양한 아시아 언어 지원 (213) 250-2977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다음 단체로 연락 주십시오.
아태미주법률센터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213-977-7500
213-977-7595 (fax)

이 가이드의 인쇄와 번역은 버라이즌(Verizon)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상기된 법은 향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특정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당신과 관련된 가족법

여성을 위한 이혼 및 관련 가족법에 대한 가이드

(Korean – Family Law)

2007 년